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0.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공정위 소관 「지자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조례·규칙) 개선율」이 행정안전부 추진 지자체 합동평가 평가지표로 확정('19.9.30.)됨에 따라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경쟁제한적 조문을 개정하여 지역시장에서의 경쟁촉진 및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급수공사 시 관급자재를 원칙으로 하는 조문 삭제(안 제10조제5항)
(현행) 관급자재를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정한다
(개정)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른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3조,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730호)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붙임)

구미시 조례 제 호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⑤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른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한 계약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 (공사의 시행) ① ~ ④ (생 략) <u>⑤ 급수공사의 자재는 관급자재를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정한다.</u>	제10조 (공사의 시행)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른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하여야 한다.</u>

관계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3조(경쟁제한적인 법령 제정의 협의등) 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의 가격·거래조건의 결정, 시장진입 또는 사업활동의 제한, 부당한 공동행위 또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등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승인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예규·고시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승인 기타의 처분을 행한 경우에는 당해 승인 기타의 처분의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경우에 당해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예규·고시 등에 경쟁제한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경쟁제한사항의 시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없이 제정 또는 개정된 법령과 통보없이 제정 또는 개정된 예규·고시 등이나 통보 없이 행하여진 승인 기타의 처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기능) 각 작업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 경쟁제한에 관한 규제영향평가와 소관 분야 규제개혁과제의 발굴 및 조사·연구
2. 기술규제개혁작업단: 기술기준 및 시험·검사·인증분야에 관한 규제영향평가,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적합성평가 존속 필요성 등에 관한 사전검토, 소관 분야 규제개혁과제의 발굴 및 조사·연구
3. 중소기업규제개혁작업단: 중소기업에 관한 규제영향평가, 규제관련 민원처리, 소관 분야 규제개혁과제의 발굴 및 조사·연구

소 관 부 서		수 도 과
입 안 자	과 장	강 신 해
	담 당	최 희 현
	담 당 자	최 문 주 (480-4452)